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26
----------	-------

발의연월일 : 2025. 8. 29.

발 의 자 : 김소희 · 최수진 · 엄태영

강승규 · 이철규 · 김상훈

김선교 · 우재준 · 백종현

박충권 · 김예지의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북촌한옥마을 등 주거지역에서 관광시설과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활 환경 침해와 주민 민원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거지에 대해서는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 기준을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제48조의3제6항 중 “관광객 통행 제한”을 “관광객 통행 제한, 관광사업 등록 제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록) ① ~ ③ (생 략)	제4조(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 설>	④ <u>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정주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보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u>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 ⑤ (생 략)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⑥ ----- ----- -----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u>관광객 통행 제한</u>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 ⑩ (생략)	----- ----- ----- ----<u>관광객 통행 제한, 관광사업 등록 제한</u>-----. ⑦ ~ ⑩ (현행과 같음)
---	--